발표자료집

"설계공모 소모적 경쟁 극복! 민간전문가 공공역할 강화!" 함께 변화의 대안을 논합니다!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2026. 9. 29(화) 14:00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10층)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후원단체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한국조경가협회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행사일정

시간	식순	주요내용
14:00-14:10	개 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개 회 사	**김진애**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14:10-14:20	기념촬영	**기념사진 촬영**
세션 1: 주제발표		
14:20-15:00	주제발표	• **설계공모 제도개선 추진방향** **전영훈**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중앙대학교 교수 •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강인호**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단장 /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15:00-15:10	장 내 정 리	
세션 2: 종합토론		
15:10-16:50	종합토론	•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 혁신방안** (좌 장) **김진애**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유준호** I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윤정현** I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이승환** I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 **김현주** I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박명권** I 한국조경가협회 회장 **김선아** I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이진철** I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6:50-17:00	마무리 말씀	**김진애**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17:00-	폐 회	**폐 회**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CONTENTS

주제발표 01

설계공모 제도개선 추진방향 08

전영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중앙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02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28

강인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단장 /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주제발표 01

설계공모 제도개선 추진방향

전영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개선 추진방향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적정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2026. 09. 29.

CONTENTS

01

목차

1. **공공건축 설계공모 현황 분석**
2. **제도개선 목표와 7대 추진기준**
3. **세부 추진 과제별 개선안**
4. **설계공모제도 체계 개편안**


연합뉴스TV
소형 공모에 매몰
"설계공모 기준
건축사협회, 국도부에 건의
공공건축 설계공모, 5개사가 절반 '싹쓸이'...심사도 '겹치기'
데일리굿뉴스 입력 2025.07.21 07:20
경남경찰, LH 설계공모서 금품비리 관련자 검찰 송치
설계업체 2명 구속, 심사위원 5명·건축업자 1명
김주영 기자 입력 2025.05.26 08:58
건축 설계공모 '불공정 경험 93.9%', 설계공모 참여 않는 주된 이유로 꼽아
'사전접촉' 징계 건축가가 심사위원으로…국토부,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없다
뉴스투나잇
아파트 설계업자, 공모
23:14
티비 운영자 징역 3년
검찰, '건진 샤넬백' 금액 특정…


제35회 국무회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조성 현황·계획
춘천MBC NEWS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체
성과 전통성을
보완해야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AI자막

1. 공공건축 설계공모 현황 분석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구조적 문제 6가지

01 소모적 과열경쟁

무제한 공개공모 중심 운영 → 사회적 매몰비용

02 심사위원 검증 부실

전문성·청렴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한계

03 심사-당선 편중

반복 위촉·대형사 쏠림 → 적정설계자 선정 한계

04 제안공모의 오용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공모제도 취지 훼손

05 건축기획 부실

기획 예산·전문성·업무 연계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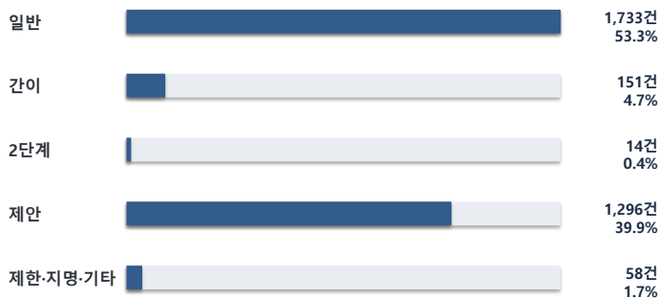
06 행정업무 부담 가중

소규모 사업까지 공모 대상 + 표준 지침 부재

1-1. 소모적 과열경쟁

무제한 공개공모가 절대적 비중

공모 방식별 건수 (2023-25, 총 3,352건) (AURI 제공)



무제한 공개공모 98.3% | 그 외 (제한·지명·기타) 1.7 %

왜 문제인가?

- 다수의 참여자가 설계안을 작성·제출
  → 사회적 매몰비용 발생
- 심사 부담 증가 및 심사 질 저하 우려
- 리그가 구분되지 않아 참여 주체별 손해
- 과다 접수에 따른 발주기관 행정부담 증가


건설·부동산 증권 산업 금융 경제 정치 사회 세저·문화 피플

소형 공모에 매몰비용 연간 960억원...
"설계공모 기준가격 상향을"

1-1. 소모적 과열경쟁

배보다 배꼽이 큰 소규모 공모시장

설계공모 연간 현황 (2022-24)

(건축5단체 제공)

매출상위 30개사 45% 당선 _ 1295팀중
당선상위 30개사가 21% 당선

공공건축 설계공모 현황(연간)
설계비 1억원이상

자료_스코어러, 마실와이드, 파주시, 서울시 등

공모수 1100개
설계비용 8,000억원
공모등록 11만 팀 / 평균 100팀
공모제출 2.5만팀 / 평균 23팀

\+ 1억원 미만 4000건 이상
공동주택
보안시설, 교정시설 등

설계사무소 16,090개
당선(22-24년) 1295팀
입상(22-24년) 약 3626팀
공모참여 52%

1~2억원 설계공모 총 718건 / 설계비 1,130억원 / 비용 3,300억원 / 당선율 4.3%

1-2. 심사위원 검증 부실

구조적 비리 발생의 근원

2024 전국 심사위원 6,036명 분석 결과

상위 1% 60명 >10%심사
5% 300명 > 25%

심사위원
Pool
6036명

심사위원 참여 현황 2024 (건축5단체 제공)

지역	공모전 개수	심사연인원	심사위원pool	평균인원	중복율
강원	92	690	409	7.5	169%
경기	164	1,577	984	9.6	160%
경상-부산-울산	296	2,455	1,565	8.3	157%
서울	96	682	523	7.1	130%
전라-광주-제주	204	1,730	1,084	8.5	160%
충청-대전-세종	162	1,264	942	7.8	134%
전체	1,015	8,401	5,510	8.3	152%

• 자천제, 인맥에 기반한 심사위원Pool 검증, 운영 한계

- 청렴성·이해충돌 여부 검증 부족
- 공모 유형·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 어려움
- 전문분야·경력 정보의 객관적 검증 한계

• 연도별 위촉횟수 상위 20인 (scorer 제공)

2022		2023 *횟수제한 도입		2024	
심사위원 A01	59	심사위원 A08	31	심사위원 A07	24
심사위원 A02	41	심사위원 A04	27	심사위원 A16	22
심사위원 A03	38	심사위원 A02	26	심사위원 A32	21
심사위원 A04	38	심사위원 A17	25	심사위원 A02	20
심사위원 A05	37	심사위원 A21	25	심사위원 A21	19
심사위원 A06	35	심사위원 A19	25	심사위원 A19	19
심사위원 A07	33	심사위원 A16	24	심사위원 A33	18
심사위원 A08	32	심사위원 A22	23	심사위원 A34	17
심사위원 A09	31	심사위원 A06	22	심사위원 A35	17
심사위원 A10	31	심사위원 A07	21	심사위원 A15	15
심사위원 A11	31	심사위원 A23	21	심사위원 A36	15
심사위원 A12	30	심사위원 A24	21	심사위원 A37	15
심사위원 A13	30	심사위원 A25	21	심사위원 A04	15
심사위원 A14	29	심사위원 A26	20	심사위원 A24	15
심사위원 A15	28	심사위원 A27	20	심사위원 A38	15
심사위원 A16	28	심사위원 A28	20	심사위원 A39	15
심사위원 A17	28	심사위원 A01	19	심사위원 A40	14
심사위원 A18	26	심사위원 A29	19	심사위원 A20	14
심사위원 A19	25	심사위원 A30	18	심사위원 A41	14
심사위원 A20	25	심사위원 A31	18	심사위원 A42	14

1-3. 심사-당선 편중

06

설계공모시장 훼손의 핵

2020-2025 설계공모 당선 통계

(EAIS 기반 분석)

4,463건
분석한 설계공모
(2020~2025, 당선 확정)

37.4%
상위 10개사가 가져간
전체 설계비 비중 (1,517개사 중)

282쌍
반복 당선 (심사위원·사무소)
쌍 (같은 공모 4회+·당선 3회+)

452개사
6개월 안에 3건 이상
당선한 사무소

사무소 수 — 건축사사무소 18,406개 중 당선 1,517개사

▼ 상위 30개사 = 단 2.0%

나머지 1,487개사 · 98.0%

설계비 — 전체 약 3.3조원 (33,275억원)

상위10개사 1.2조원·37.4%	11~30위 21.6%	나머지 41.0%

5년간 약 3,200개의 사무소가 4,500개의 공모에 참여하여
그중 10개사가 **40%** 를, 30개사가 **60%** 를 차지

• 공모발주 상위 15기관

발주처	공모 수	설계비(억)	참여 사무소	상위 10사 설계비 점유
조달청	446	3,747	419	48.5%
경기도교육청	348	1,770	139	49.8%
한국토지주택공사	102	3,182	54	56.1%
제주특별자치도	63	248	146	46.8%
부산광역시교육청	62	372	136	48.4%
경상북도교육청	56	212	60	48.1%
국가철도공단	48	537	82	87.9%
한국어촌어항공단	44	78	66	53.8%
인천광역시교육청	39	226	99	69.0%
한국자산관리공사	36	402	68	73.9%
부산광역시	33	184	97	62.0%
한국농어촌공사	30	92	52	62.0%
전라남도교육청	30	140	66	65.0%
한국철도공사	29	235	36	81.3%
우정사업조달센터	26	132	78	88.6%

국가철도공단 참여 82사 · 당선 22 · 설계비 537억

사무소 수 (82사 = 100%) — 상위 10사 = 12.20%

상위 10사 (10사) | 그 외 당선 12사 | 입상만 60사

472억 | 65억

설계비 (537억 = 100%) — 상위 10사 = 87.9%

1-3. 심사-당선 편중

07

설계공모시장 훼손의 핵

2020-2025 심사-당선 상관 통계(예)

(EAIS 기반 분석)

#	사무소	위험도 상위 쌍을 형성한 심사위원 수	당선 공모	반복 조합 공모	최다 사례 (한 공모 기준)
1	(주)종합건축사사무소	29명	107건	76건	심사위원 10명 중 9명
2	(주) 건축사사무소	10명	74건	52건	심사위원 9명 중 8명
3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9명	87건	49건	심사위원 8명 중 7명
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8명	70건	37건	심사위원 9명 중 7명
5	(주) 건축사사무소	6명	79건	31건	심사위원 7명 중 4명

누계 52건 당선 매칭 9/10명 설계비 10.3억 2025-02-

보존시설 확충사업 시청 종합건설본부

당선 사무소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공모 심사위원 중 — 이 사무소가 당선된 다른 공모를 과거에 심사한 적 있는 사람:

(7회 심사) · (4회 심사) · (5회 심사) · (6회 심사) · (3회 심사) · (4회 심사) · (10회 심사) · (7회 심사) · (6회 심사)

#	심사위원	사무소	심사횟수	당선횟수	당선률	위험도
1	오	(주) 건축사사무소	17	16	94%	16.0
2	유	(주) 건축사사무소	14	10	71%	10.0
3	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14	10	71%	10.0
4	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9	9	100%	9.0
5	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10	9	90%	9.0
6	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11	9	82%	9.0
7	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7	8	114%	8.0
8	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10	8	80%	8.0
9	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9	8	89%	8.0
10	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9	8	89%	8.0
11	김	(주) 건축사사무소	7	8	114%	8.0
12	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7	7	100%	7.0
13	정	(주) 건축사사무소	12	7	58%	7.0
14	정	(주) 건축사사무소	7	7	100%	7.0
15	진	(주)건축사사무소	7	7	100%	7.0

95,000번의 심-당 조합의 92%가 1회, 당선률 4.3%이지만
4회 이상(487)에서 **60%**, 7회 이상(51)에서 **90%**

서울시

프로젝트 서울 2019-2020

당선 건수	당선 업체	설계비
27	27	346.10

1-3. 심사-당선 편중

08

설계공모시장 훼손의 핵

1% x 1%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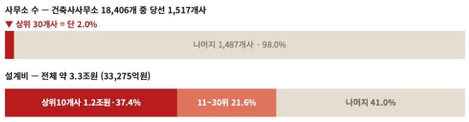
5년간 약 3,200개의 사무소가 4,500개의 공모에 참여하여
그중 0.3%가 **40%** 를, 1%가 **60%** 를 차지

95,000번의 심-당 조합의 92%가 1회, 당선률 4.3%이지만
0.51%(487)에서 **60%**, 0.05%(51)에서 **90%**

X

상위 1% 60명 >10%심사
5% 300명 > 25%

심사위원 Pool 6036명



1-4. 제안공모의 오용

09

변질된 설계자 선정 공모

2025년 410건 중 408건 분석 결과 (AURI 제공)

200건 (49.0%)

제안공모 취지 미부합 진행 확인

- 일반공모와 구분되지 않는 계획도면, 도판 요구
- 조감도, 투시도, 공사비 상세내역 요구

347건 (85.0%)

획일적, 일반적 제안요청과제 제시

408건 (100%)

설계자 선정이라는 제도 취지 훼손

왜 문제인가?

취지 → 특화된 설계자의 경험·역량·수행계획 중심
주민협의 등 향후 조정가능성 높은 사업 대응

현실 → 입면·도면·조감도 등 설계안 요구
공모지침을 오용한 발주기관의 자의적 선택
설계자 역량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부재

결과 → **일반설계공모와 사실상 동일한 경쟁**
설계안보다 설계자 우선 선정 취지 훼손
신진건축사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선 원칙
① 법 개정을 통한 임의성 제거
② 디자인·도면·공사비 내역 요구 금지
③ 실효성있는 설계자 평가방식 도입

1-5. 건축기획 부실

10

공공건축 품질 확보의 첫 단추

예산편성 기준 부재

- 건축기획 개념과 업무범위가 불분명
- 적정비용 산정 근거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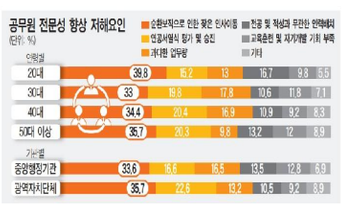
발주기관의 파편화

- 담당 부서별 발주에 따른 편차 발생
- 인적• 물적 제약에 따른 파행적 공심위 운영
- 사업이 적은 중앙부처, 기획면제 대형사업의 부실 우려



전문성•연속성 축적 한계

- 건축직 부족, 자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 단계 간 연계와 전문성 축적 한계



매년 1,100개의 공모가 890개의 기관에서 발주되며,

중앙부처•대형사업일수록 건축기획의 부실 우려가 크다.

1-6. 행정업무 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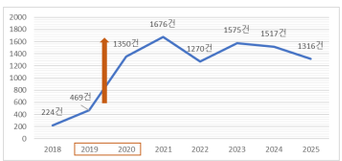
11

기획 부실, 기계적 발주의 원인

설계공모 대상 확대

2.3억원 → 1억원

- 의무 기준액 하향에 따른 물량 증대



설계공모 FM의 부재

- 부서별, 능력별 편차에 의한 QC 확보 한계
- 기관별 공모 운영의 혼선 발생



공모 후속 업무량 증가

- 기획 부실로 인한 당선작 설계변경 빈번
- 공모-발주-공사의 단절에 따른 업무 중첩
- 예기치 못한 사업 조정



공모 당선작의 74%가 설계과정에서, 44%가 공사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다.

2. 제도개선 목표와 7대 추진기준

12

01 설계공모 본연의 목적 회복
공공건축의 품질 가치 제고
공모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사회적 매몰비용·행정 낭비 방지

02 10년 운영의 구조적 한계 극복
공모과열 완화와 다양성 확보
설계자 선정 공모방식 정비
심사-당선 유착 파훼

02 3대 관련 법제 재정비와 연동
건축기본법 개정
건축산업혁신 촉진법 제정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개정

- 3-1. 과열경쟁 방지 및 공모부담 완화
- 3-2. 참여제한공모 요건 구체화
- 3-3. 설계자 선정 기능의 회복
- 3-4. 심사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 3-5. 건축기획 및 관리 내실화
- 3-6. 공공건축심의 실효성 제고
- 3-7. 행정업무 부담 완화

단순한 '공모운영 개선'이 아니라 공공건축의 '기획·발주·심사·관리 체계의 구조 재편'을 목표

3. 세부 추진 과제별 개선안

13

7대 추진 기준과 20 세부 추진 과제

구분	연번	추진 기준	세부 추진 과제	제·개정 필요사항
설계공모·심사	3-1	과열경쟁 방지·공모부담 완화	·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사업 간편공모 적용 의무화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 설계공모 우선적용 제외 대상 확대	
			· 2단계 설계공모 유형 제외 (공모별 선택 수단으로 전환)	
			· 건축사 사전 등록 제도 시범 운영 :광역 지자체 단위, 민간 건축가 제도와 연계	
	3-2	참여제한공모 요건 구체화	· 신진공모 대상 및 운영방식의 구체화	
			· 지명공모 대상 및 운영방식의 구체화	
			· 지역제한공모 대상의 구체화	
			· 제한공모 자격제한 관련 조항의 이관	
	3-3	설계자선정 기능의 회복	· 제안공모 제도 개편 :제안공모 적용대상 재구성 및 역량 평가 중심 개편	
	3-4	심사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적용방안,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법제화	건축산업혁신 촉진법 제33,34조 제63,64,66조
			· 심사자와 참가자 부정행위 처벌규정 강화 및 법제화	
			· 데이터 기반 심사위원 전문성 검증 수단 마련	
			· 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관련 유관 단체의 자격제한 등 실효수단 마련	

구분	연번	추진 기준	세부 추진 과제	제·개정 필요사항
기획·관리	3-5	건축기획 및 관리 내실화	· 건축사업총괄(PM) 제도의 도입 :건축사업의 기획 및 사업관리 전략 수립, 발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 업무의 총괄·조정 및 협업 지원	건축산업혁신 촉진법 제11조
			· 기획업무 수행범위 정비	건축산업혁신 촉진법 제12조
			· 기획업무 대가기준 마련	재정경제부 예산안편성세부지침(비목반영)
	3-6	공공건축심의 실효성 제고	· 광역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무설치 및 기능 확대 · 시·군·구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사업 ·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공공건축사업 · 전문적인 심의 또는 광역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공건축사업	건축산업혁신 촉진법 제13조
			· 국가상징 사업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기능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사업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공공건축사업 ·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조정 또는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건축사업	
운영	3-7	행정 부담 완화	· 광역단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전문가 제도 확대를 통한 기획 발주 지원	건축산업혁신 촉진법/ 건축기본법
			· 설계공모 표준지침,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및 공모 관련 교육지원 확대	

3-1. 과열경쟁 방지 및 공모부담 완화

1) 설계비 2억원 미만 사업 간편공모 적용 의무화

(현행) **간편공모(現 간이공모)는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권장 운영**

☞ 간편공모 적용 비중이 낮아(전체 공모건수의 약 4.7%), 제도 활용 저조한 실정임
일반설계공모에 비해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의무화 필요

(적용범위)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사업**

(반영법률)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건축산업혁신 촉진법**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출물 유형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 선택 기준

구분		현행	개선(안)
설계안 선정 (디자인 우수성 평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일반설계공모** **간이공모** 2단계 설계공모	**간편공모**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일반설계공모**
설계자 선정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 심사)		제안공모	제안공모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14조 (건축설계의 발주)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 및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설계공모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1. 일반설계공모** **2. 간편공모** **3. 제안공모** **4. 참여제한공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방식

3-1. 과열경쟁 방지 및 공모부담 완화

2) 설계공모 우선적용 제외 대상 확대

(현행)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 금액 기준으로 모든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시행**

☞ 단순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사업까지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
사업수행능력평가 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공모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물량 감소 효과

(적용범위) **내진보강, 단순 성능개선, 유지보수 등의 사업**

(반영법률) **건축산업촉진혁신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현행	개정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좌동) 2. … 3.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창호•문 교체, 내외부 단열재 보강, 설비시설의 단순 성능개선, 성능개선, 유지보수, 구조보강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3) 2단계 설계공모의 유형 제외

(변경사항) **2단계 설계공모는 공모방식 유형에서 제외하는 대신, 모든 공모에 적용가능한 절차적 운영수단으로 전환**

3-1. 과열경쟁 방지 및 공모부담 완화

4) 건축사 사전등록 제도 시범 운영

(운영범위) **광역지자체 단위 운영**

(대상사업) **설계비 1억원 이상 3.3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공건축**

지역밀착형 생활 SOC, 리모델링 사업 등을 우선

(선정방식) **신청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모 적용**

(운영기간) **2년 단위로 사전등록POOL 등재, 갱신평가 실시 (횟수 제한)**

(등록방식) **공고 → 신청 → 자격심사 → 평가 → 명부 등재·공개** 순으로 진행

(평가기준) **수상경력, 수행실적, 전문역량, 디자인능력, 가점(신진, 여성)**

(활용방안) **참여제한공모, 간편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

2억 이상 : 적합분야 확정(관리팀) → 참여제한공모 시행(발주기관) → 건축사 선정(발주기관)

1억 - 2억 : 적합분야 확정(관리팀) → 간편공모 시행(발주기관) → 건축사 선정(발주기관)

1억 미만 : 적합건축사 제안(관리팀)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기관) → 건축사 선정(발주기관)

(반영법률) **건축서비스산업촉진법**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14조 (건축설계의 발주)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 및 건축문화의 향상을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등의 건축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설계공모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

..

4. 참여제한공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방식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설계공모의 대상, 운영기준,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상경력 건축사를 대상으로 참여제한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해외사례)

국가	핵심 제도 및 법령	기본 발주방식	소규모 공공건축 특화 운영방식
프랑스	MIQCP (공공건축 지원기구) LoiMOP(공공건축법)	제한경쟁 공모 및 사전적격심사(PQ)	MAPA (맞춤형 계약절차): 일정 금액 이하의 소형 프로젝트는 복잡한 공모전을 전면 생략. 포트폴리오와 약식 인터뷰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해 업체들의 과도한 매몰비용을 차단.
영국	Framework Agreement (프레임워크협약)	풀(Pool) 기반 제한경쟁	건축가 풀(Pool) 운영: 지자체 등 발주처가 3~4년 단위로 역량이 검증된 건축가 풀을 미리 구성하고 소형 프로젝트는 전국공모 대신 이 풀 내부에서 약식경쟁(Mini-competition)을 치르거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입찰 비용을 최소화.
미국	Brooks Act (브룩스법)	QBS (자격기반선정방식)	프로젝트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의 자격, 경험, 포트폴리오만을 평가해 1순위자를 선정한 뒤 설계비를 협상. 소형 프로젝트에서도 덤핑을 방지하고 철저히 질적 경쟁을 유도.
독일	VgV (공공조달규칙) HOAI(건축사보수규정)	적격심사 및 지명경쟁	HOAI 제도로 법정 설계비를 보호. 소형 프로젝트는 실적 요구 기준을 대폭 낮추고, 지역 기반의 신진 및 소규모 건축가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공모를 열어 대형 업체의 독식을 방지.

해외 건축사 등록제도 운영 실적 사례

사업명	School Street / Thomas Court Bawn 주거지 재개발 사업	Donore Avenue Youth & Community Centre – Building Repair Works
		
위치	아일랜드 더블린 8구(Dublin 8) School Street / Thomas Court Bawn 부지 (6,530㎡)	Donore Avenue, Dublin 8, Ireland
발주기관	더블린 시의회 (DCC Framework)	
당선사	Metropolitan Workshop	Cotter & Naessens Architects
사업 성격	**철거 및 기존 건물 리노베이션** 기존단지철거및기존건물그린리모델링증축 신축 아파트 4개 동(124세대) 및 커뮤니티/보육시설 설계	화존 청소년·커뮤니티센터 **화재 피해 복구 및 리노베이션**
조달제도	RFT 142472 Lot 2, **미니공모**	RFT 142472 Lot 1, **미니공모**
설계 용역 범위	**사업 초기 기획부터 설계, 인허가, 시공 현장 감리, 완공 후 인도까지 전 과정**	**기존 건축물 정밀조사 및 복구·수선 설계, 인허가 및 공사 관련 설계업무**
설계 용역 계약금액	€3,756,976 (약 60억 원)	€0.78 million (약 12.25억 원)
연면적	11,000㎡~12,000㎡	1,400㎡ 이상
공사비	(미확정)	약 €8.39 million (약 131.8억원)

출처: https://engage.dublincity.ie/en-IE/projects/school-street-thomas-court-bawn-part-8-planning-consultation/1
https://ted.europa.eu/TED
https://bidsfactory.com/en/companies/arr-cotter-naessens

사업명	Tower Court	The Charter School East Dulwich
		
위치	Clapton Common, Stamford Hill, Hackney, London E5	East Dulwich Grove, Southwark, London SE22
발주기관	London Borough of Hackney	London Borough of Southwark
사업 성격	**노후 공공주택 철거 후 혼합형 공공주택 재건축**	**옛 Dulwich Community Hospital 부지를 활용한 중등학교 및 Sixth Form 조성**
조달제도	ADUP, Lot 2: Architecture, **미니공모**	ADUP, Lot 2: Architecture, **미니공모**
설계 용역 범위	기본·계획설계, 주민참여, 다학제팀 총괄 및 계획허가 업무, RIBA Stage 3+까지의 설계	RIBA Stage 3까지의 건축가 주도 설계 및 계획허가 업무
설계 용역 계약금액	**£242,675.43 (약 4.65억 원)**	**£803,000.00 (약 15.37억 원)**
연면적	약 13,622㎡	약 10,205㎡
공사비	약 £37 million (약 708.40억 원)	(공개자료 확인 어려움)

출처: https://www.hackney.gov.uk/planning-and-building/hackney-building/where-hackney-building/tower-court?utm;
https://fcbstudios.com/projects/the-charter-school-east-dulwich?utm (검색일: 2026.8.13.)

3-2. 참여제한공모 요건 구체화

1) 신진공모 대상 및 운영방식의 구체화

(현행)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제한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 가능**

☞ 법률상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 관련 세칙이 없어서 유명무실 상태
참여자격, 운영범위, 적용대상, 공모방식에 대한 조문 마련이 필요

(참여자격) 만 45세 이하,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운영범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 중 **일정 비율 의무 할당**

(대상사업) 설계비 1억원 이상 3.3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공건축

(공모방식) 2억원 이하 간편공모, 2억원 이상 제안공모 방식 준용

[신진건축사 정의 사례]

구분		정의	근거
국내		만 45세 이하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조19호
국외	독일 Brandenburg 주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Brandenburg 주 건설부 공모 가이드라인 (RPW 2013 조항 적용), Arbeitshilfe Richtlinien fur Planungswettbewerbe p.19

3-2. 참여제한공모 요건 구체화

20

2) 지명공모 대상 및 운영방식의 구체화

(현행)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필요한 사업, 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시행 가능**

☞ 시행관련 사항을 발주기관에 위임하였기에 독단운영의 폐해 발생
공정성의 이유로 국가 랜드마크급 사업까지 일반설계공모로 운영
건축문화 확산에 파급력 있는 대형 공공건축 사업에 지명공모 권장 필요

(운영원칙) ① 과정의 공개성 확보
② 지명 기준의 객관화
③ 국제공모의 선별적 적용 (국가 상징사업 등 제외)

(대상사업) 디자인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국가 상징사업,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

(평가기준) 디자인 철학 및 전략, 인터뷰 및 소통 역량, 기술적 전문성 및 예산 통제력

(보완사항) 참여총량제 도입, 국제공모 시 국내건축사 비율 확보, 독립적 지명공모운영위원회 운영

3-2. 참여제한공모 요건 구체화

21

3) 지역제한공모 대상의 구체화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3억원 이하 설계, 감리 용역에 대해 지역제한발주 가능**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역제한공모를 금지한 건축설계운영지침과 충돌
제한사유, 운영범위, 적용대상, 공모방식에 대한 조문 마련이 필요

(제한사유) 지역성, 현장대응과 유지관리의 연속성,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한정

(반영법률)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시행령에 구체화. 기타 광역공심위 심의, 교차 심사위원제 도입

4) 제한공모 자격제한 관련 조항의 이관

(현행) **제한 또는 지명공모의 조건에 '특별한 기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포함**

☞ 제한 또는 지명공모 관련 시행세칙이 없어서 발주기관 오용 우려
설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개념은 지명공모와 제안공모에 적합

(자격이관) 제안공모, 지명공모의 대상으로 이관

3-3. 설계자선정 기능의 회복

22

■ 제안공모 제도 개편

(적용대상) 특별한 기술의 적용과 설계자의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한정

☞ 특별한 기술에 대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발주처가 악용하는 독소 조항을 삭제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29조 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현행	개정
1.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사용자 등 관계자, 다른 공종 전문가,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1. 리모델링, 특화설계 등 사업에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 **특별한 기술의 적용과 설계자의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모듈러 건축, DfMA 등 신기술 분야의 적용과 기준 충족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사용자 등 관계자, 다른 공종 전문가,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삭제)**

(요청과제) 특별한 기술 등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도록 개정

(평가방식) 발주기관의 사전평가 방식에서 심사위원회의 직접평가 방식으로 전환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34조 (평가)

현행	개정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4. 심사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23

1)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적용방안,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법제화

(반영법률) 건축산업혁신촉진법 ☞ 법률상 투명성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 행위 관계를 법률로 규정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33조: 금품수수, 부정행위를 명시, 심사공개 원칙과 범위 명시

제33조 (설계공모심사 투명성 제고 등)
③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기관의 장은 설계공모 참여자가 심사위원에게 부당한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전 접촉, 금품 제공, 부정한 자료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참여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선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의 장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향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발주기관의 장은 설계공모 당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당선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의 장은 설계공모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과정,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 등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34조 : 부정행위 참가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명시

제34조 (설계공모 참가자격의 제한)
①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설계공모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설계공모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자 2. 설계공모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3. **담합, 부정한 접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설계공모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자

3-4. 심사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2) 심사자-참가자 부정행위 처벌규정 강화 및 법제화

(반영법률) 건축산업혁신촉진법 ☞ 직접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및 심사위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축산업 혁신 촉진법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좌동)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3. 4. (좌 2,3과 동)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64조, 제66조 (벌칙): 제 33조, 제34조의 투명성 제고, 참가자격 위반에 대한 구체적 처벌조항 마련**

제64조 (벌칙)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자**

제66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심사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3) 데이터 기반 심사위원 전문성 검증 수단 마련

(검증목표) 사업특성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선별

☞ 사업의 규모·용도·주요 설계 등을 고려해 전문분야를 설정하고, 심사위원의 전문분야·경력·심사 이력을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심사위원 선정•관리체계 마련

(구축방식) 건축HUB 활용하여 공모데이터 분석, 국가인재풀 데이터 등을 연동

(운영주체) 국토교통부의 관리 아래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공

<서울시 운영 S-POOL 사례>

서울시 심사위원 구성 방식

1단계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수 확정
2단계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S-POOL 3배수 난수추출' 조건 확정

※ 난수추출 예시
○ **심사위원 추천 요청 : 5명**
○ **심사위원 구성비율 : 공모전입상** 60%, **건축상** 40%, **잡지게재** 0%, **논문** 0%
○ **전문분야 결정 : 문화및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키워드 추가 : 기숙사'**
⇒ **공모전 입상자 중 '문화및집회시설' or '제1종근린생활시설' or '기숙사' 이력자 난수추출(5명*60% = 3명에 대한 3배수 9명)**
⇒ **건축상 수상자 중 '문화및집회시설' or '제1종근린생활시설' or '기숙사' 이력자 난수추출(5명*40% = 2명에 대한 3배수 6명)**
⇒ **분과위원회에서는 추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후보 우선순위 부여(설계공모 사업의 특성, 용도별 전문성, 출신학교의 다양성, 실무(업계)·학계간 비율, 성별 균형, 비위 이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3단계 : 이력(데이터) 기반 디지털시스템에 의한 추천
*S-POOL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3배수 후보자 추천
4단계 : 3배수 후보자 추천 후 공공건축심의 분과위원회 검토 후 선정
*비위행의, 이력, 출신학교, 성별, 연령 안배 고려 우선순위 부여
*분과위원회 : 공정성, 균형적 검토 위하여 5개 단체 참여

4) 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구축방식) 건축산업혁신법 시행령에 운영주체, 관련절차 등 법적 근거를 마련

☞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 관련전문단체가 연결된 센터의 운영주체, 가동방식, 관련절차, 포상재원 조성 등에 대해 구체화

(병행사항) 대한건축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자격제한 등 실효적 제재수단 병행

<해외 부정신고· 포상제도 사례>

1. 미국 :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과 퀴탐(Qui Tam) 제도
퀴탐(Qui Tam) 소송제도: 내부 고발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부정행위를 한 기업을 올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파격적인 포상금(Bounty): 부정이 입증되어 정부가 손해액을 환수하게 되면, 내부 고발자는 그 환수액의 15%에서 최대 30%까지 포상금 수령
AIA(미국건축사협회)의 내부고발 규정: AIA 역시 자체적인 'Whistleblower Policy(내부고발자 정책)'를 명문화

2. 영국 : 중대비리조사청(SFO)과 RIBA의 엄격한 통제
포괄적 뇌물방지법(Bribery Act): 공모에서 심사위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사전 접촉을 한 기업은 상한선 없는 전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RIBA(왕립건축가협회)의 즉각적인 퇴출: RIBA는 윤리 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에 부패 방지를 명시하고, 회원이 공공 수주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적발되면, RIBA 징계 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를 통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자격 박탈(제명) 조치를 취한 후 이 사실을 공시

3-5. 건축기획 및 관리 내실화

26

1) 건축사업총괄(PM) 제도의 도입

(도입취지) 건축사업의 기획에서 유지관리에 이르는 각 단계별 주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

☞ 공공건축의 내실화를 위해 선진국형 건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PM제도를 법제화

(반영법률) 건축산업혁신촉진법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2조: 건축사업총괄을 정의**

제2조 (정의)
6. "건축사업총괄"이란 건축사업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 발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해체 등 건축사업 전 과정에서 업무 간 연계 및 조정을 수행하고 건축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건축서비스**를 말한다.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11조: 건축사업총괄의 역할,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CM) 업무와 구분**

제11조 (건축사업총괄)
① 건축주는 건축사업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축사업의 각 단계와 주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하여 건축사업총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업총괄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② 건축사업총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사업의 **기획 및 사업관리 전략**의 수립 지원 2. **발주방식, 사업추진절차** 및 계약체계에 관한 자문 3. 건축사업 참여자 간 **업무의 총괄·조정 및 협업** 지원 …

3-5. 건축기획 및 관리 내실화

27

2) 기획업무 수행범위 정비

(반영법률) 건축산업혁신촉진법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12조: 공공기관 건축기획업무 의무화 및 업무수행 범위를 정비**

제12조 (건축기획)
① 건축주는 건축사업의 목적, 기능 및 품질 을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기획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은 건축기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2. 사업의 규모·내용 및 사업기간 3.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4. 발주방식 및 사업추진방안 5. 품질목표 및 디자인관리방안 6. 에너지효율, 탄소중립 및 유지관리 등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3) 기획업무 대가기준 마련

(추진사항) 재정경제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의 비목 반영,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시행령 마련

구분	비목	적용대상	
설계비	420-01목	기본조사 설계비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주요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건축분야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

3-6. 공공건축심의 실효성 제고

28

1) 광역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무설치 및 기능 확대

(도입취지) 기초지자체의 행정부담 완화, 투명한 공모발주를 도모

☞ 광역단위 조정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심의 내실과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기초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광역단위 공심위에서 심의

(반영법률) 건축산업혁신촉진법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31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계층화를 통한 심의기능의 조정**

제31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시·군·구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사업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공공건축사업 3. **전문적인 심의 또는 광역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공건축사업

3-6. 공공건축심의 실효성 제고

29

2) 국가상징사업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기능 부여

(도입취지) 국가적 상징성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의 충실화 도모

☞ 국가단위 조정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심의 내실과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전문가 자문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심의 권한을 국건위에 부여

(반영법률) 건축산업혁신촉진법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31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제31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사업은 제1항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사업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공공건축사업 3.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조정 또는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공건축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

3-7. 행정업무 부담완화

1) 광역단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전문가 제도 확대를 통한 기획•발주 지원

(도입취지) 광역단위 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기초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기획내실화 도모

☞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일선 지자체에 광역단위의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확보

(주요내용) 지역공센 권장 조항을 광역단위는 의무로 전환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업 지원

(반영법률) 건축산업혁신촉진법, 건축기본법

○ **건축산업혁신촉진법 제 36조: 광역단위의 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관할 기초지자체 사업을 지원**

제36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지원센터는...**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성격 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지원센터간 업무의 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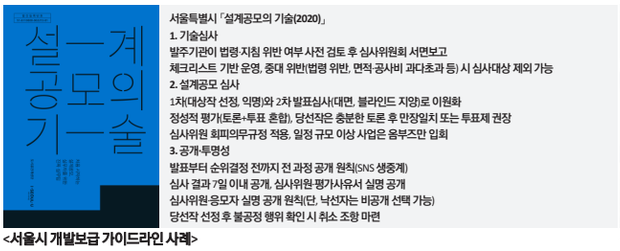
○ **건축기본법 제30조: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공모의 운영 지원을 명시**

제30조 (민간전문가제도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정책, 공공건축사업 및 공간환경 개선사업의 **기획・자문・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관리자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공모의 기획·운영** 및 건축 관련 절차에 관한 자문....7. 지역 건축문화 진흥 및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조정**

3-7. 행정업무 부담 완화

2) 설계공모 표준지침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및 공모 관련 교육지원 확대

(운영방안) 건축HUB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활용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및 공모관련 교육을 확대



<서울시 개발보급 가이드라인 사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3) 무제한 공개공모 물량 축소 및 간소화를 통한 부담 완화

(향후전망) 간편공모 및 참여제한공모 확대, 우선적용 제외대상 확대, 건축사 등록제도, 민간전문가 풀 활용은 공개공모 물량축소와 발주간소화에 기여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

4. 설계공모제도 체계 개편안

현행		개편(안)				
		공모유형	선정대상	공개여부	핵심내용	적용시점
일반설계공모	→	① **일반설계공모**	설계안 선정	공개공모	•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즉시
간이공모	→	② **간편공모**			•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의무 적용**	단기
제안공모	→	③ **제안공모**	설계자 선정		• 특별한 기술의 적용, 설계자의 대응능력이 중요한 경우 • **설계자 선정 목적의 공모**가 가능하도록 개정	단기
지명·제한공모	→	**4-1 신진공모**	설계안+ 설계자 선정	④ **참여제한공모**	• 설계비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 **업력 또는 연령 기준**에 따른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	중장기
	→	**4-2 지명공모**			• **디자인 시범사업, 국가 상징사업, 특별한 기술력 요구 사업**	단기
	→	**4-3 지역제한공모**			• 설계비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 **광역단위 제한**	단기
2단계 설계공모		(공모별 선택가능한 수단으로 전환)			• 어떤 공모 방식이든 **필요시 2단계 적용 가능**토록 개정	-
(신설)		⑤ **건축사 사전 등록 제도**			• **광역 단위 사전 등록 건축사 POOL 운영** • 시범운영 후 전국단위 적용	중장기

STEP 1 **사업목적** → STEP 2 **공개여부** (공개/ 참여제한) → STEP 3 **선정대상** (설계안/ 설계자) → STEP 4 **공모유형** (신진/지명/지역)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주제발표 02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강인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단장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추진 방향

강 인 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장 (공공건축분야)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목 차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현황/개선 필요성

- 제도의 도입 경위와 민간전문가의 역할
- 민간전문가 관련 제도 구축과 지원사업
-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특징
-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개선 필요성 및 방향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방향 검토

-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제와 개선방안 검토
-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 아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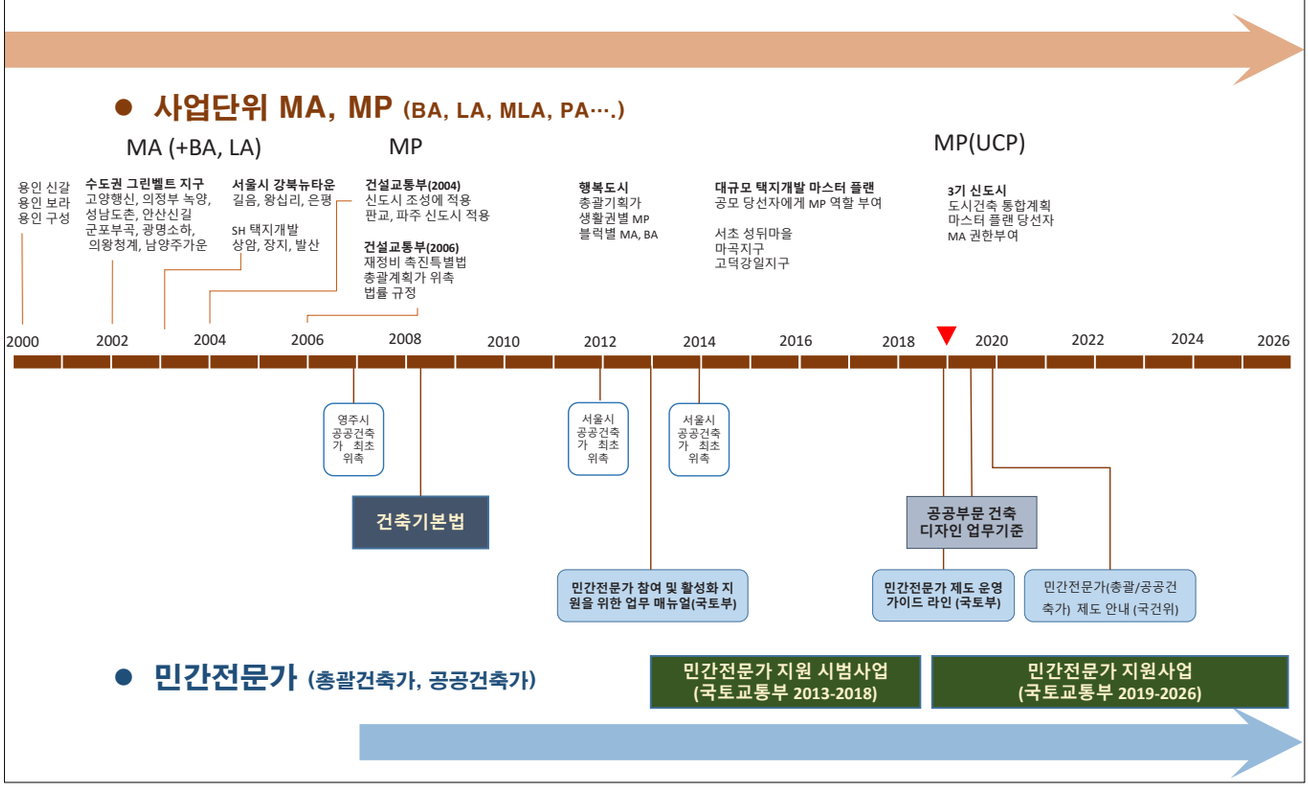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추진방향

- 법령 개정 및 조정 : 고시 및 가이드 라인 개정
- 공공건축 조성 체계와의 연동
- 제도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현황/개선 필요성

- 제도의 도입 경위와 민간전문가의 역할
- 민간전문가 관련 제도 구축과 지원사업
-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특징
-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개선 필요성 및 방향

• 제도의 도입 경위와 민간전문가의 역할 : MA(MP) vs 민간전문가



- **제도의 도입 경위와 민간전문가의 역할 : MA(MP) vs 민간전문가**

MA, MP (사업별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BA, LA, MLA, PA….)

MA (+BA, LA)
MP(UCP)

- 해당 프로젝트 기본구상 및 설계의 총괄
- 복수 설계자의 조정 및 정합성 확보

→ 특정 프로젝트 기반의 계획 활동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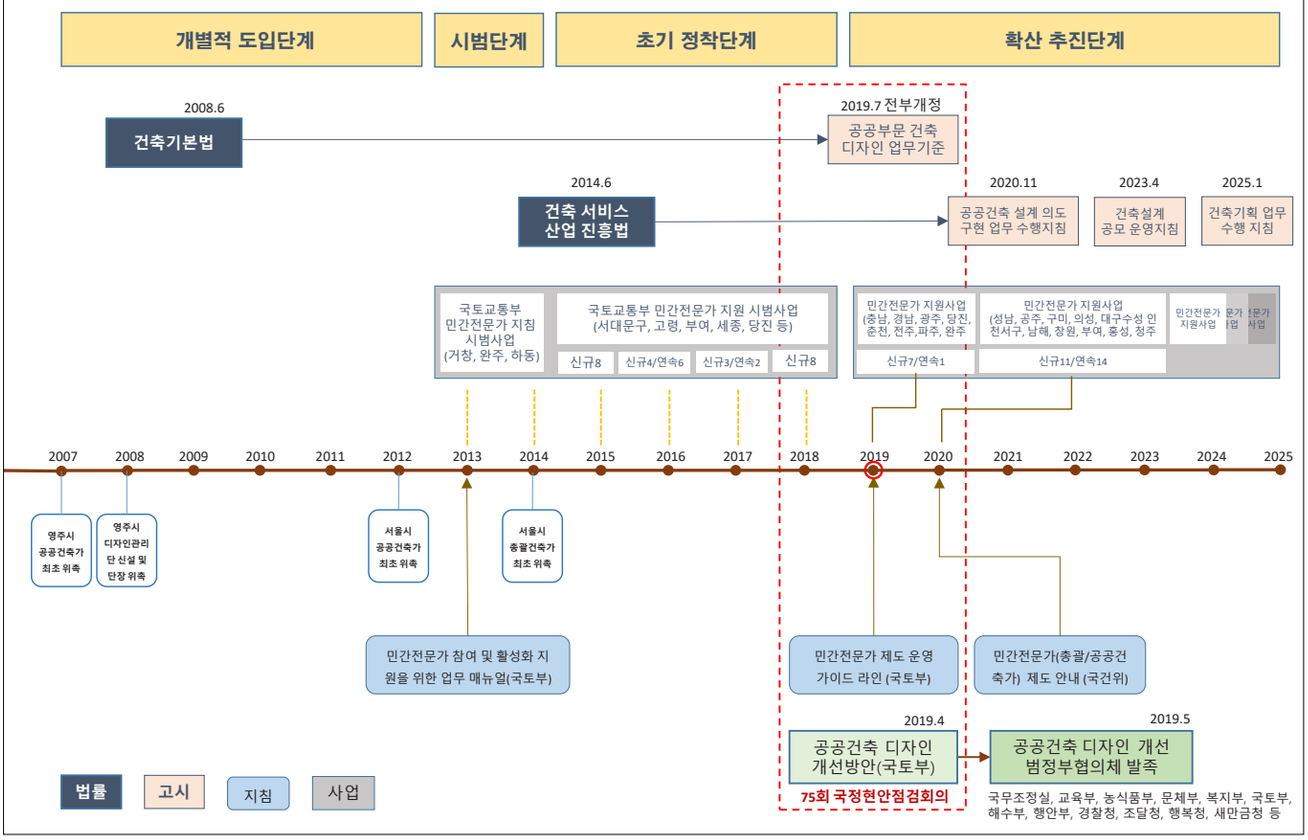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 지자체 기반의 공간환경전략 구상 및 실행
- 총괄건축가 – 건축-공간환경의 정책 검토/방향제시, 복수 사업의 통합 조정
- 공공건축가 – 건축-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설계 조정/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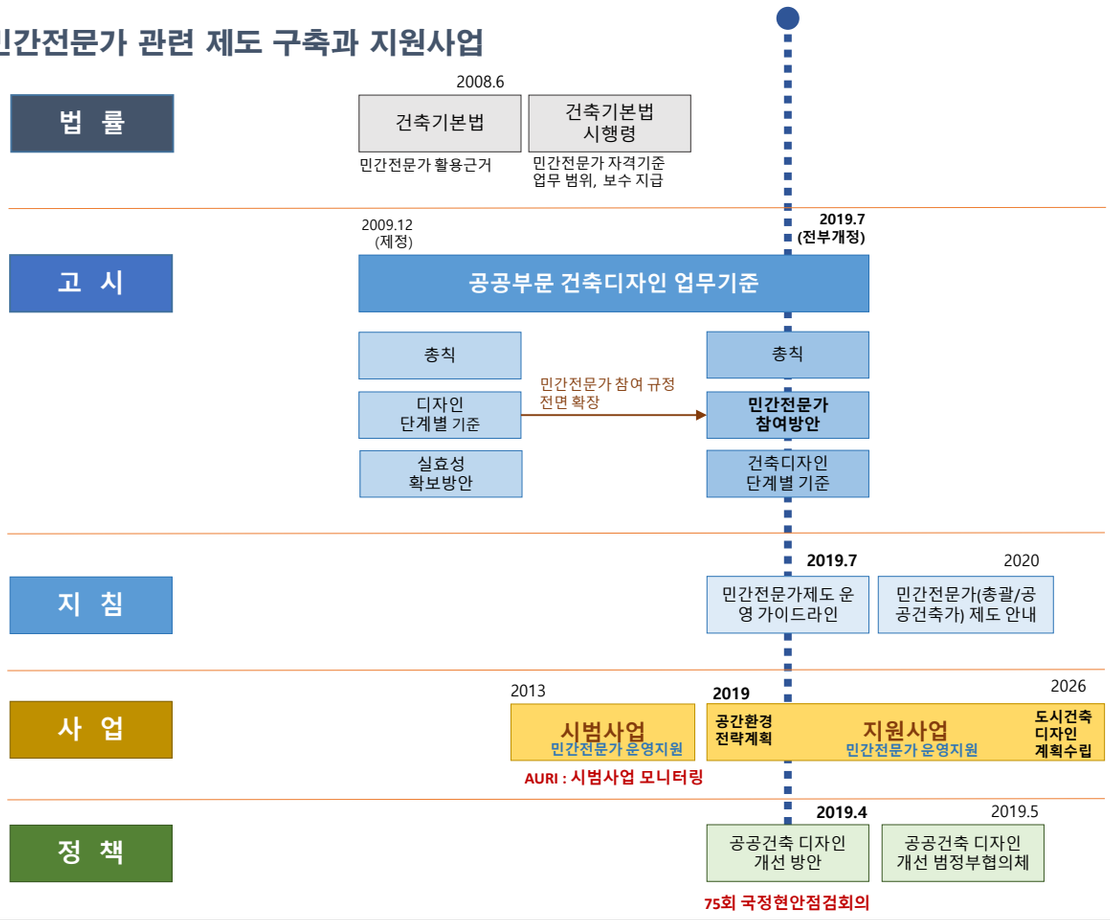
→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 및 전략 구축, 자문/조정

MA, MP와 구분되는 민간전문가의 역할, 기능 차별화

- **민간전문가 관련 제도 구축과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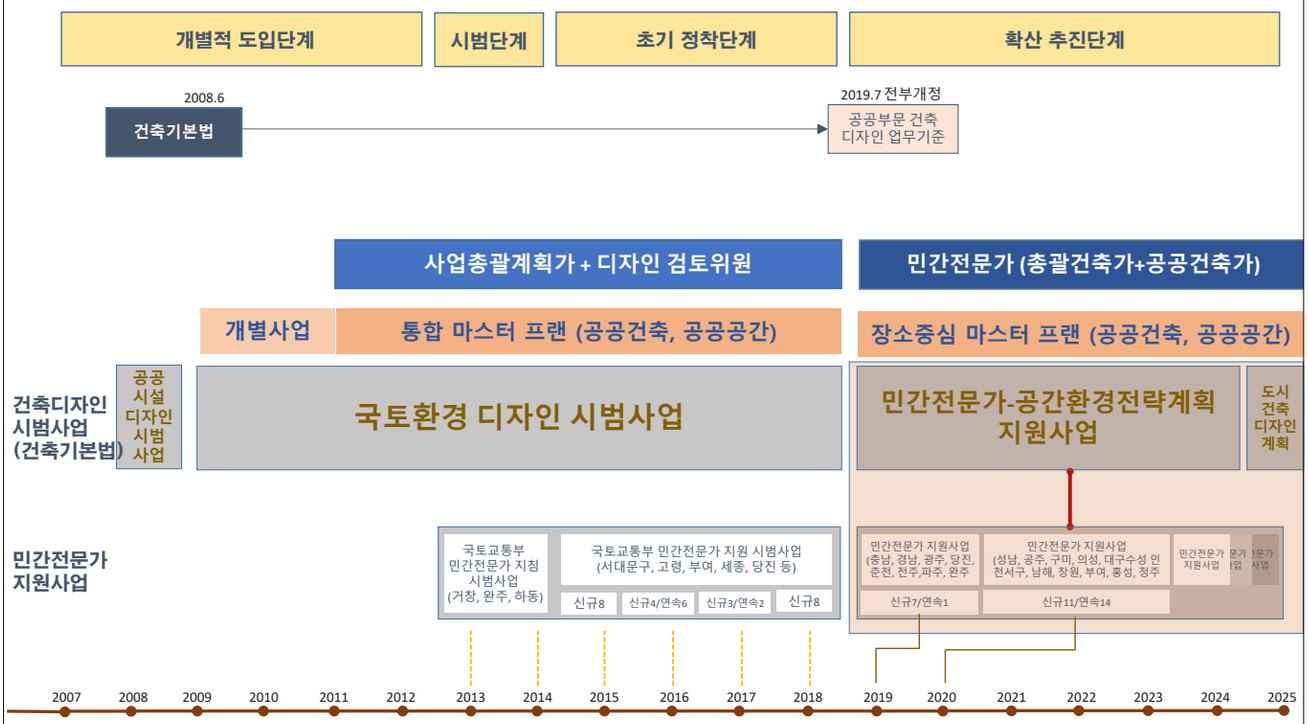
- 민간전문가 관련 제도 구축과 지원사업



- 민간전문가 관련 제도 구축과 지원사업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강화 : 범정부 협의체 구성
    -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및 활동 여건 확장
    - 면적 계획활동에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어촌뉴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고시)을 통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전면개정을 통한 대폭 확대 (2019)
    - 단계별 건축디자인 업무와 민간전문가 참여를 결합
  -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 라인 작성 배포
    -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지속
    - 1차, 2차 시범사업-지원사업의 순차적 추진을 통한 제도 정착 노력
    - 시범,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 유형 및 내용의 지속 수정
      : 단순 운영 지원 → 지역공간환경전략구축과 민간전문가 활동의 연계, 통합

-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특징**



-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특징**

1) 개별 프로젝트 중심에서 통합적 공간환경 전략계획 중심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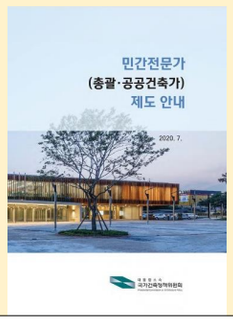
- 특정 공공건축의 지원사업에서 도시공간의 장소성 확보, 공공공건과 공공건축의 통합성 증시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초기 특정 프로젝트 지원에서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지원으로 변화
  - 이후 공간환경전략계획, 도시건축 디자인 계획 수립 등으로 명칭 변경 : 장소 중심 통합공간계획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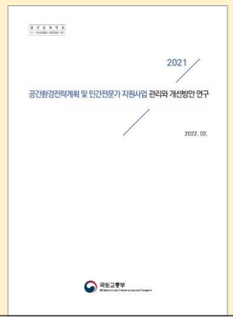
2) 민간전문가 활동과 지역단위 공간 마스터 플랜 구축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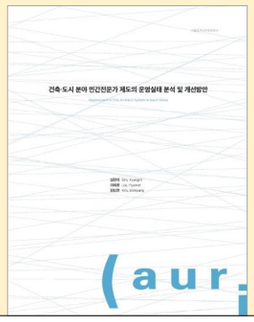
-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 사업총괄 MP →
- 공간환경전략계획 :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지원의 패키지화
  - 개별 프로젝트 MP → 국토환경 통합 마스터 플랜 MP → 공간환경전략계획 총괄건축가

-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특징** : 참여 확대, 활성화를 다면적 노력

  -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고시', '가이드 라인' 의 제정 및 주기적 개정 등 법률적 장치를 통한 제도 활성화 노력을 꾸준히 전개
  - 관련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시범사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제도 정착 노력 지속
  - 지원사업과 함께 제도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연구 등 진행하여 지원사업의 형태, 지원유형, 사업내용 등을 발전적으로 조정, 시행
  - 단위 건축물보다 도시 차원의 건축 및 공간환경 정책 검토 및 자문 등 행정단위, 권력 단위 공간환경의 구축이라는 역할과 활동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추진



-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자치단체별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운영현황 (2026)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서울	1	2	1	158	6	6	0	0	총괄건축가, 총괄디자이너/공공건축가 252->158축소(20260720)
부산	1	2	1	60	1	1	1	13	총괄건축가, 총괄디자이너
대구	-	0	1	38	0	0	1	15	
인천	1	2	1	52	1	1	1	3	
대전	1	1	1	40	0	0	0	0	공공건축가 60-->40 축소(20260805)
광주	-	0	1	50	1	2	0	0	*광주동구의 경우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울산	-	0	1	55	0	0	0	0	
세종	-	0	1	20	0	0	0	0	
경기	-	0	-	0	10	10	15	224	
강원	-	0	-	0	1	1	1	11	
충북	1	1	1	25	1	1	1	30	
충남	1	1	1	40	6	6	9	62	
전북	1	1	1	29	1	4	0	0	정읍에 4명(총괄계획가)
전남	1	1	1	34	2	2	2	17	
경북	1	1	1	45	4	4	6	73	
경남	1	1	1	36	6	6	18	196	
제주	1	1	1	38	0	0	0	0	
계	**11**	**14**	**15**	**720**	**40**	**44**	**55**	**644**	

총괄건축가	개소	인원
광역	11	14
기초	40	44
계	**51**	**58**

공공건축가	개소	인원	평균
광역	15	720	48
기초	55	644	12
계	**70**	**1,458**	

전국 자치단체수	참고 : 2020년 1월 기준 (공공건축가)	
17	광역	7개소 506명 (41.2%)
227	기초	10개소 72명 (4.4%)
	*국회입법조사처(2020.3)	

(2026.2월 기준, 국토교통부 조사자료) /일부 자료 저자 업데이트

*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 기존의 각 광역자치단체로 잠정 구분

-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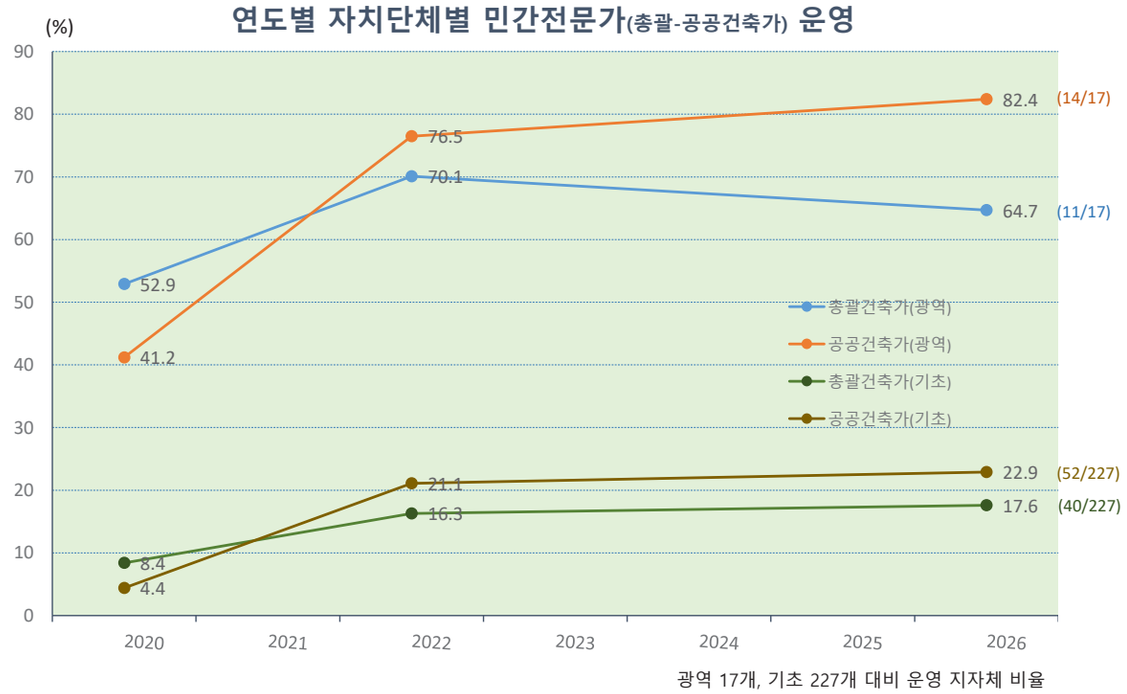
연도별 자치단체별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운영

	2026.2 (1)				2022.1 (2)				2020.1 (3)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지자체수	인원	지자체수	인원	지자체수	인원	지자체수	인원	지자체수	인원	지자체수	인원
광역 (17)	11 64.70%	14	14 82.4%	760	12 70.10%	12	13 76.50%	689	9 52.90%	9	7 41.20%	506
기초 (227)	40 17.60%	44	52 22.9%	685	37 16.30%	44	48 21.10%	458	19 8.40%	19	10 4.40%	72
계 (244)	51 20.90%	58	66 27.0%	1,445	49 20.1%	56	61 25.0%	1,147	28 11.50%	28	17 7.00%	578

자료 (1) 국토교통부 조사 자료 (필자 일부 자료 보완)
자료 (2) 임유경 외,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와 개선방안 연구, 2022.2 국토교통부
자료 (3) 김예성,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과 향후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20.3.24(필자 일부 자료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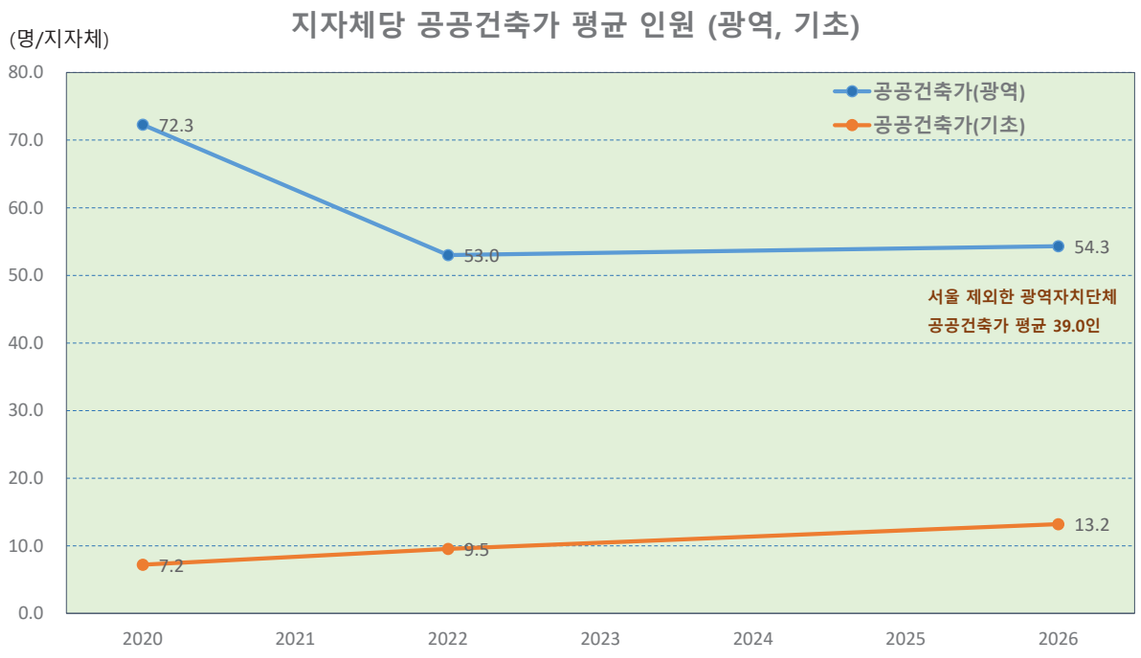
-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연도별 자치단체별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운영



광역 17개, 기초 227개 대비 운영 지자체 비율

-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개선 필요성 및 방향**

민간전문가

- 2019, 2020년에 집중 도입
- 2022년 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정체 또는 완만한 증가

총괄건축가

(광역)

-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6개 지자체가 미운영 상태 (운영비율 64.7%)
- 이중 4개 지자체는 당초부터 운영경험이 없고 (대구, 울산, 경기, 강원)
- 2개 지자체는 운영중단 (세종, 광주)

(기초)

- 227개 기초자치단체중 40개 지자체 운영 (17.6%) 하여 매우 저조
- 2020년 8.4%에서 매우 완만한 상승

공공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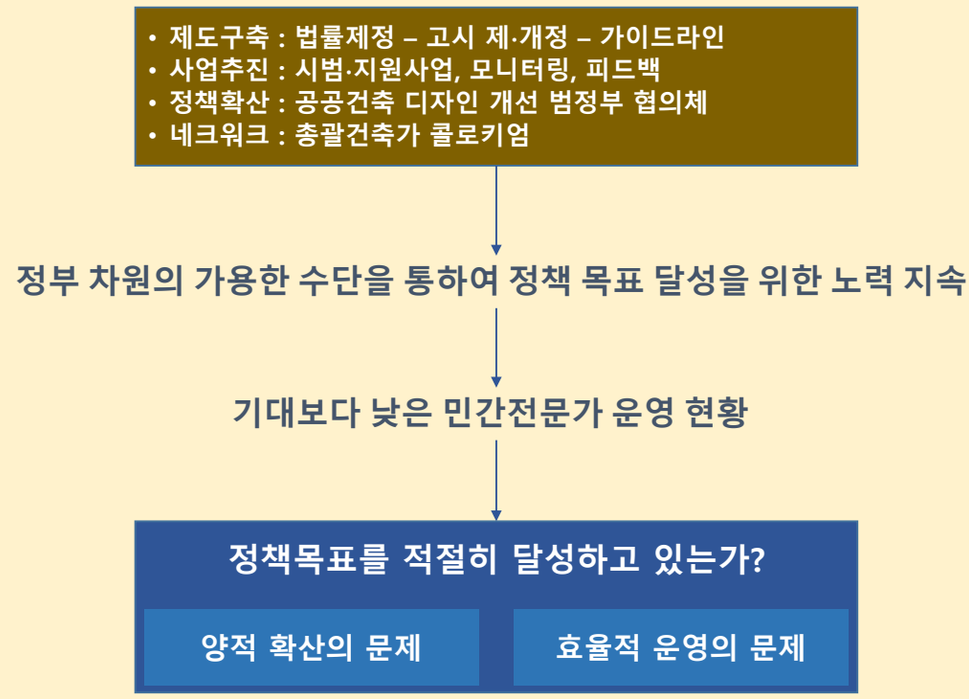
(광역)

- 17개 광역지자체중 14개 지자체가 운영 (82.4%)
  - 총괄X 공공O : 4개 – 대구, 광주, 울산, 세종
  - 총괄O 공공X : 1개 : 인천
  - 총괄X 공공X : 2개 : 경기, 강원

(기초)

- 227개 지자체중 52개 지자체 운영 (22.9%)
- 운영중인 지자체의 공공건추가는 평균 13.2 (인/지자체)

-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 개선필요성 및 방향**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방향 검토

-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제
-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 아젠다

•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제

(1) 공공 건축가 활동 원칙

- **공간의 공공성**

  : 공공건축의 가치, 지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공간의 공공성 확장을 위한 노력

- **활동의 공공성**

  :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은 공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적 기여 활동

(2) 지원, 시스템 구축 중심 활동

- **System**

  : 도시, 건축공간 조성 시스템 (Architectural Delivery System)과 연동된 운영체계 구축

- **Guideline**

  : 도시 전체의 구성/디자인 원칙, 조성 지침 설정 / 핵심 지침 – 지자체별 적용 다양성 보장

- **Advice**

  : 기획 및 기획 내용 실현을 위한 디자인 과정 및 내용 자문, 조정 기능

  : 구체적 설계 활동이 아닌 자문 / 조정 / 지침

- **Netwotk**

  : 총괄/공공건축가 활동의 네트워크 구축, 이를 통한 정보교류, 아카이빙 기반 조성

•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 아젠다

■ Track 1 : 도시, 건축의 미래상과 관련 정책, 전략 영역

- 도시의 상황 진단, 장기적 도시 이미지, 비젼
- 지역 특성화 방향, 전략구상, 상위적 공간구성의 개념
- 거점별 특성화 전략 (Local vision / Local program)
- 지역 현안 및 공간조성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 사업제안

■ Track 2 : 개별 프로젝트 질 제고를 위한 지원 영역 – 공공공간, 공공건축

-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 건축공간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
- 건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자문, 지원
- 설계발주 및 공모지원
- 설계 진행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검토 및 의견 제공, 필요한 조정

■ Track 3 : 민간전문가 활동지원을 위한 제도 및 네트워크 구축 영역

- 지자체 단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제도 운영
- 건축기본법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고시)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지자체 조례의 제도 틀로 운용
- 경찰청 교육청 등 공공건축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민간전문가 운영 미흡

•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 아젠다

■ Track 1 : 도시, 건축의 미래상과 관련 정책, 전략 영역

[Agenda T1-01] 지자체 / 공공기관 비젼 및 정책방향 설정 – 활동여건 구축

과제 T1-01-01) 총괄/공공건축가로 구성되는 비젼, 정책 제안을 위한 조직, 제도 마련

과제 T1-01-02) 도시 건축 미래상,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Agenda T1-02] 법정 계획을 통한 3차원 도시 미래상 설정 – 제도적 조정

과제 T1-02-01) 법정계획 - 3차원 도시건축 비젼의 관계설정, 구체적 비젼 설정

과제 T1-02-02) 지자체별 공공건축의 차별성, 지역성 발휘 – 총괄/공공건축가 역할 강화

[Agenda T1-03] 총괄, 공공건축가의 면적 계획 참여 활성화

과제 T1-03-01) 면적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총괄/공공건축가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과제 T1-03-02) 공간환경의 기본구조를 정하는 법정 계획 수립과정에 총괄/공공건축가 검토, 자문 보장

[Agenda T1-04] 도시건축 조달 체계 및 실행방안, 공공건축가 참여 (Delivery system)

과제 T1-04-01)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공공건축가 지원 및 활용 체계 구축 : 실질적, 실천적 방안 검토 필요

•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 아젠다

[예시]

[Agenda T1-02] 법정 계획을 통한 3차원 도시 미래상 설정 – 제도적 조정

과제 T1-02-01) 법정계획 - 3차원 도시건축 비젼의 관계설정, 구체적 비젼 설정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 / 건축디자인 기준 등)

▶민간전문가의 역할 규정에 공간환경 관련 법정계획에 대한 지원, 자문 역할을 명기

(고시 6조 : 민간전문가 역할)

①총괄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 역할에도 포함 / 또는 조항 신설)

(현행)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개정) ->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법정계획 수립 지원, 자문 및 조정

(법정 계획의 구체적 대상은 가이드 라인에서 명기)

③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행) 1.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개정) 2호(신설) 공간환경의 조성과 관련한 법정계획의 3차원적 구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또는 **(신설03)** 4호(신설) 총괄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

과제 T1-02-02) 지자체별 공공건축의 차별성, 지역성 발휘 – 총괄/공공건축가 역할 강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실화

(신설04)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의무화 규정 (협의, 자문, 조정))

(신설05) : 지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할 주요 내용 명기)

--> 지역의 건축자산 기반 공간환경의 조성 – 지역성 표현의 적극적 고려 명기

▶시범사업의 프렛폼 구축 및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 건축자산 발굴, 활용 - 민간전문가 활동 연계 : 시범사업 시행 및 건축HUB를 활용한 프렛폼 구축

-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 아젠다**

■ **Track 2 : 개별 프로젝트 질제고를 위한 지원 영역 – 공공공간, 공공건축**

[Agenda T2-01] 건축기획 활동의 내실화, 지원체계화 - 총괄, 공공건축가 역할 증대

과제 T2-01-01) 건축기획 의무화 규정의 실질적 준수 –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확대방안

과제 T2-01-02) 건축기획단계에서부터 담당 공공건축가 배정 및 역할의 직무화

[Agenda T2-02] 건축 설계공모방식의 효율화 및 총괄 공공건축가의 역할, 기능

과제 T2-02-01) 설계공모 과정에 총괄/공공건축가의 지원 범위 및 기능 규정

과제 T2-02-02) 지자체 단위의 설계공모 내용 및 사후 관리 – 건축설계 HUB 등재

[Agenda T2-03] 총괄/공공건축가 사전 협의 – 제도적 수행성 강화

과제 T2-03-01) "건축부문 민간전문가 업무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과업 지침 구체적 검토

과제 T2-03-02) 공공건축 심의 신청시 공공건축가 지정 여부 및 자문, 조정 결과 필수 첨부 규정

[Agenda T2-04] 디자인 관리 취약 대상 사업의 총괄/공공건축가 매칭 시스템

과제 T2-04-01) 공모 미시행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방안 – 총괄/공공건축가 활용방안

과제 T2-04-02) 장소성 조성에 중요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 방안

과제 T2-04-03) 기초자치단체의 광역 공공건축가 개방, 활용 유도의 제도적 지원

-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 아젠다**

[예시]

[Agenda T2-04] 디자인 관리 취약 대상 사업의 총괄/공공건축가 매칭 시스템

과제 T2-04-01) 공모 미시행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방안 – 총괄/공공건축가 활용방안

▶ 공모 미시행하는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 방안 마련

현행) 고시 10조(설계발주발식 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는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고시 10조(설계발주발식 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 (위와 동일) …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부득이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민간전문가(공공건축관리자)를 지정하여 설계과정 및 내용에 대한 자문, 조정을 수행토록 한다.**

과제 T2-04-02) 장소성 조성에 중요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 방안

▶ 민간 전문가에 공공디자인 분야의 참여 방안)

조항 신설) (다른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소성 조성 및 통합적인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16조 및 동 법 시행령 7조에 의해 위촉된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과제 T2-04-03) 기초자치단체의 광역 공공건축가 개방, 활용 유도의 제도적 지원

고시] 제3장 건축디자인 단계별 기준

조항 신설 8조 (건축 디자인 단계별 민간전문가 참여) 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계별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제9조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전문가 전담부서에 요청하여 민간전문가를 배정받아야 한다. 이때 전담부서에는 배정하는 공공건축가를 해당 프로젝트의 '공공건축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공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에게 민간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공공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 아젠다**

■ **Track 3 : 공공건축가 관련 규정 정비**

[Agenda T3-01] 법령 및 지침, 행정체계 정비

과제 T3-01-01) 공공공간-공공건축 조성 및 총괄/공공건축가 활동 관련 타법령 과의 정합성 검토 조정

[Agenda T3-02]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 전국 및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과제 T1-02-01) 전국 단위 총괄/공공건축가 네트워크 프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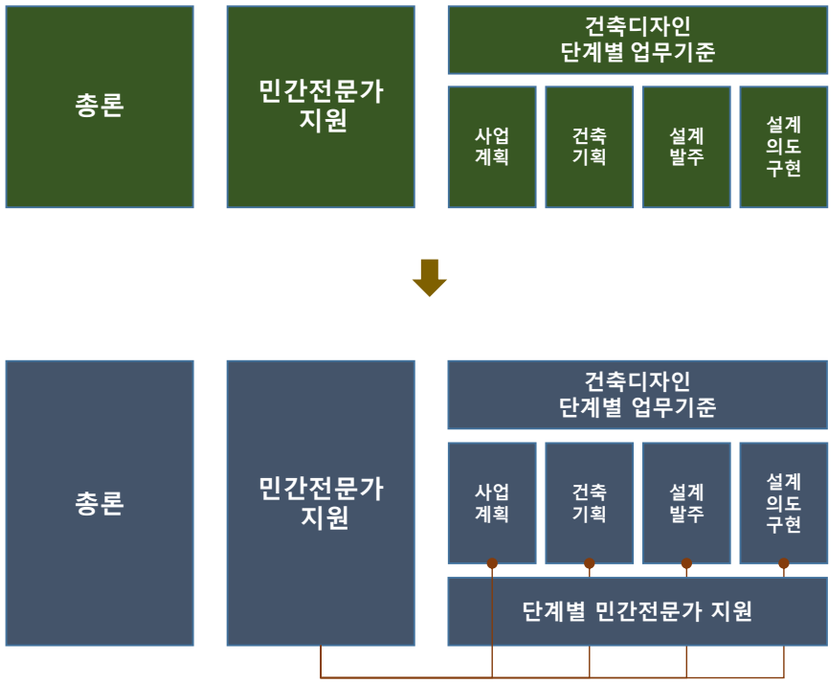
과제 T1-02-02) 지자체 단위 총괄/공공건축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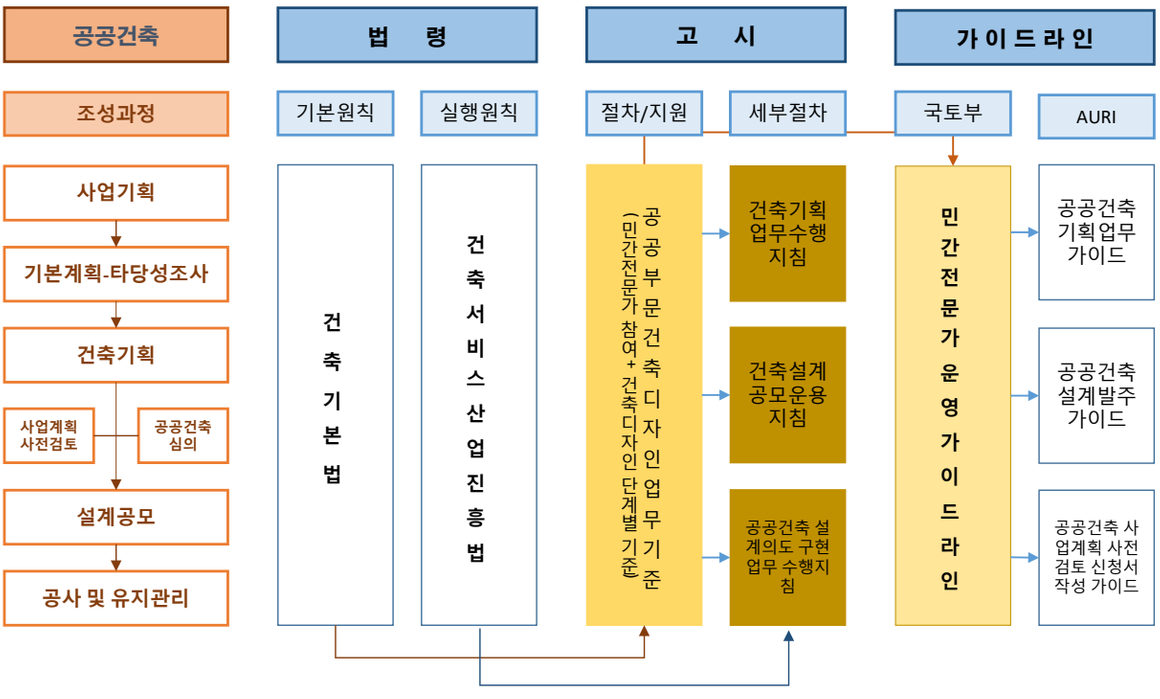
- **법령 개정 및 조정 : 공공건축 조성 체계와의 연동**
- **타법과의 정합성 검토**
- **제도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

• 법령 개정 및 조정 – 공공건축 조성 체계와의 연동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체계 조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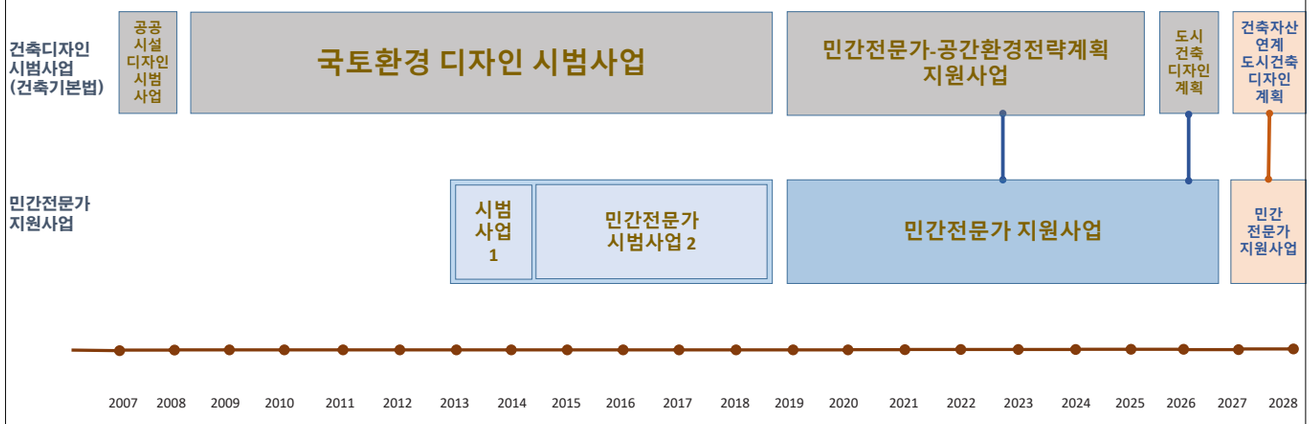


• 타법과의 정합성 검토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관련 고시와의 정합성 검토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

  - 민간전문가 – 지역건축자산 조사 활용 연계한 지원사업 제안



End – Discussion



대 통 령 소 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